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13조(말소등록)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제1항 규정에 따라, 상속개시일(2025. 9. 6.)이 발생한 소유자의 차량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신청을 해야 하나,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 부과)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, 고지서,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2. 위반내용: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신청 지연
3. 근거법령: 자동차관리법 제13조(말소등록)
4.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

대상자	주소	등록번호	반송사유
김*희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*번길 **, ***호	인천82다6*2*	폐문부재

5. 공고기간: 2026. 5. 15.(금) ~ 2026. 5. 29.(금)[15일]
6. 문 의 처: 인천광역시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(☎032-560-4880)

2026년 5월 15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